

의안번호	2213105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6. 1. 21.
추 계 번호	25A5159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배터리산업 기본계획 수립, ②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③통계의 작성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 3,500만원(연평균 8,7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80	—	—	—	—	80	16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안 제7조)	16	16	16	16	16	80	16
통계의 작성 (안 제10조)	55	55	55	55	55	275	55
합계	151	71	71	71	71	435	87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7조(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①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배터리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의무규정
3	제8조(배터리산업 정책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배터리산업 정책지원단(이하 “정책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책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9조(배터리산업 정책 전담기관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육성·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배터리산업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배터리산업정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2. 배터리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3. 배터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4. 배터리산업 관련 시장 창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배터리산업 관련 원료·소재 등의 국산화 지원 6. 배터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배터리산업 관련 제품 표준의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8. 배터리산업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9. 배터리사업자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 10. 배터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11.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안 제10조(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배터리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1조(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및 셀·모듈·팩 등 완제품의 제조,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 응용 제품의 보급·활용 등 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全週期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2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① 정부는 배터리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배터리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3조(국산화 및 기술 자립 촉진)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핵심 원료·소재 등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촉진 및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4조(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술개발, 사업화, 판로개척,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0	안 제15조(우선구매 및 공공수요 연계 실증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산 배터리 관련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 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수요와 연계하여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실증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고, 이 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1	안 제16조(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 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균형발진 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2	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 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술이전 중개, 기술평가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의 가 치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기술 거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13	안 제18조(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 활화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배터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배터리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교육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 관 5. 그 밖에 배터리산업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배터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4	안 제19조(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때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설치를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배터리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배터리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배터리산업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배터리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재량규정
15	안 제20조(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배터리클러스터에 입주한 배터리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배터리산업과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2. 배터리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 시설·설비의 설치·구축·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배터리클러스터 내 배터리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수도권 외의 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6	안 제21조(실증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구축)	① 정부는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다)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증을 위한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배터리사업자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 실증사업(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실증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7	안 제22조(배터리 안전·품질 인증 체계 강화)	① 정부는 배터리 관련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배터리 안전·품질에 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배터리 안전·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내 배터리 안전·품질 인증 체계를 국제 표준과 조화롭게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국내 배터리사업자가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무규정
18	안 제23조(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및 데이터 활용·공유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효율화·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터리 관리시스템이나 그 밖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9	안 제24조(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2. 수출 상담 및 해외 마케팅 지원 3.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5.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사업	
20	안 제25조(자원외교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핵심 광물의 해외 탐사·개발·생산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재량규정
21	안 제26조(국제협력 및 기술 보호)	③ 정부는 국제 표준의 대응 및 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4.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22	안 제27조(배터리산업 특별회계)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배터리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배터리산업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특별회계 보유재산의 매각 또는 운용 수입 6.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터리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2. 배터리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3.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배터리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5.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6.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활용 확산을 위한 사업 7. 배터리산업 생산보조금 지원사업 8.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0. 그 밖에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④ 특별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⑤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안 제29조(세제 지원)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시설 투자 확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24	안 제30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시설투자, 수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이나 대환, 보증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25	안 제31조(민관 투자펀드 조성)	①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 투자펀드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 투자펀드의 조성·운영 방식과 지원 대상 사업, 투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26	안 제32조(생산보조금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 생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셀 등 배터리 제조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생산비용 2. 핵심 원료·소재의 국산화 또는 대외 의존도 축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생산비용 3.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고정비용 또는 환경설비 운영비용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생산비용 4.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의 내재화 또는 국내 생산 전환 시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 5. 배터리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 및 관련 인증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생산보조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7	안 제33조(전기요금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배터리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배터리산업 관련 원료·소재·부품·장비 또는 제품의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가동할 것 - 생산비용에서 산업용 전력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터리 에너지저장 장치를 설치·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의 기간,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	-
2	안 제7조(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	○ (일부추계)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에 대하여 추계함. 다만, 분과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구성 기준과 개수, 소속위원의 정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회의수당 등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3	제8조(배터리산업 정책지원단)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위원회 운영 및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은, 구성과 운영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원단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겸임 여부, 신규로 채용될 임기제공무원의 수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4	안 제9조(배터리산업정책 전담기관 지정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배터리산업정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지원,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비,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5	안 제10조(통계의 작성)	○	-

6	안 제11조(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술개발, 배터리아카데미 구축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자료]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
7	안 제12조(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	
8	안 제13조(국산화 및 기술 자립 촉진)	×	
9	안 제14조(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	
10	안 제15조(우선구매 및 공공 수요 연계 실증사업)	×	
11	안 제16조(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	×	
12	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13	안 제18조(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활화 지원)	×	
14	안 제19조(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	
15	안 제20조(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	
16	안 제21조(실증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구축)	×	
17	안 제22조(배터리 안전·품질 인증 체계 강화)	×	
18	안 제23조(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 및 데이터 활용·공유 지원)	×	
19	안 제24조(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	×	
20	안 제25조(자원외교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	
21	안 제26조(국제협력 및 기술 보호)	×	
22	안 제27조(배터리산업특별 회계)	×	
23	안 제29조(세제 지원)	×	
24	안 제30조(금융 지원)	×	
25	안 제31조(민관 투자펀드 조성)	×	
26	안 제32조(생산보조금 지원)	×	
27	안 제33조(전기요금 지원)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부는 다수의 배터리산업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참고자료]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

-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안심사와 사업준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 해부터 5년마다 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2026년에 8,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유사 연구사례로는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 마련 연구용역」(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9,500만원),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7-Tool 중심) 변화 및 정책적 대응방안 수립 용역」(한국화학연구원, 2024년, 4,900만원), 「대전시 이차전지산업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2024년, 6,800만원) 등
 -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배터리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80	-	-	-	-	80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000만원(연평균 1,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의 수는 16명, 회의 횟수는 분기당 1회씩 연 4회로 가정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안 제7조제2항에 따라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인 대통령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경제부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정원 20명에서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한 16인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기획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을 고려하여 1회 대면회의시 25만원을 지급함
 -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 회의 개최·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참석수당은 민간위원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000만원(연평균 1,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2027~2031년: 민간위원 수(16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1,600만원

[표 3]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안 제7조)	16	16	16	16	16	80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다. 통계의 작성(안 제10조)

□ 배터리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 작성에 따른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하고, 연간 5,500만원씩 추계기간 동안 총 2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제정안의 배터리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하여 동 조사에 5,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유사 연구사례로는 「차세대 이차전지 분류체계 수립 및 연계산업 조사·분석」(한국화학연구원, 2024년, 5,400만원), 「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 정비 연구용역」((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4년, 4,950만원) 등

[표 4] 배터리산업에 대한 통계의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통계의 작성 (안 제10조)	55	55	55	55	55	275	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assembly.go.kr

[참고자료]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련 제정안 조항	세부사업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
안 제19조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첨단전략산업특화 단지기반시설구축 지원 (2026년)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 단전기공급	—	—	2,730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 단 도로확장	—	—	1,764
		새만금국가산단 전기공급 시설 확충	—	—	1,718
안 제12조 (소재·부품·장 비산업 육성), 안 제13조 (국산화 및 기술 자립 촉진)	차세대이차전지상용화 지원센터		4,670	1,650	—
	빅데이터기반상용배터리공정고도화플랫폼구축		—	2,400	3,570
	기관실장용산화물계초소형적층세라믹전고체전 지(MLCB)개발(R&D)		4,521	6,670	5,835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구축지원		5,000	3,500	2,500
	전기차배터리통합관리체계고도화사업(정보화)		—	475	—
	전기차배터리시스템일체형급속무선충전기술개 발(R&D)		—	4,000	7,000
	EV배터리접합기술실증기반구축		1,500	1,920	1,913
	이차전지 실시간고도분석센터		2,500	3,200	3,579
	EV용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화재안전성평가기반구축		3,500	6,400	5,100
	이차전지원자재분자단위분석기반구축		—	—	3,615
	미래이차전지원료소재실증플랫폼기반구축		—	—	2,280
	저가격·장수명나트륨이차전지핵심소재및셀제조 기술개발(R&D)		2,600	5,850	5,150
	실리콘고함량음극극판및셀적용기술개발(R&D)		3,500	5,850	5,150
	이차전지첨단전략산업글로벌협력지원(R&D)		2,000	2,000	2,500

관련 제정안 조항	세부사업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
	수요맞춤형산업별배터리소재및셀기술개발(R&D)	—	—	3,500
	하이망간리튬이온이차전지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R&D)	—	—	5,000
	인체밀착형웨어러블기기용전고체리튬고분자배터리개발(R&D)	—	5,000	6,500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 및 저장취급시설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	800	1,000
	소재부품기술개발(R&D)(첨단전략산업초격차(이차전지))	6,000	6,100	—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혁신제조기술개발(R&D)	6,140	17,850	—
안 제26조 (국제협력 및 기술 보호)	이차전지첨단전략산업글로벌협력지원(R&D)	2,000	2,000	2,500
안 제18조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 활화 지원)	배터리아카데미구축	5,710	6,000	5,740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